

부 령

● **환경부령 제888호**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11월 23일

환 경 부 장 관 인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40조제2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기관

별표 3 제2호 중 “오염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로”를 “정량한계값으로”로 한다.

별표 6 제5호 중 “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”를 “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별표 7 제1호 시안화수소란 다음에 먼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먼지	24시간 평균치 30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	연간 평균치 15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
----	---	---

별표 15 제3호나목3) 중 “「하수도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”을 “「하수도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. 다만, 방류수수질기준이 가목에 따른 최대배출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적용한다.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환경부장관 귀하”를 “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”로 하고,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“유역환경청 · 지방환경청 · 수도권대기환경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직인란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각각 “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“환경부장관 귀하”를 각각 “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”로 하고,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“환경부”를 각각 “유역환경청 · 지방환경청 · 수도권대기환경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 제3쪽 중 “환경부장관 귀하”를 “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”로 한다.

별지 제21호서식 중 “환경부장관 귀하”를 “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환경의 질 목표 수준 관련 유효기간)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부장관이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려는 경우 그 측정을 요청해야 하는 검사기관에 시·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추가하고, 잔류성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종전에는 해당 오염물질의 최대 배출기준으로 하던 것을, 앞으로는 해당 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환경부 제공>

●법무부령 제987호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11월 23일

법무부장관 인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비용) 「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호에서 “통지·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

1.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환가 및 징수 비용
2. 영 제5조제1항·제2항,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지·공고에 드는 비용
3.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

제3조(통지) ①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「우편법 시행규칙」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로써 해야 한다.

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
제4조(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의 방법) ① 청구인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한다.

1.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
2. 청구인의 통장 사본
3.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(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4. 그 밖에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소명(疏明)하는 자료

②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“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